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2. 26.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3. 4.

다. 상정일자 : 제14회임시회 제2차위원회 ('93.3.17)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석봉)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되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제1항중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변경 :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기감, 기정, 기좌, 기사등으로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인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등으로 그체계를 일원화함.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3. 2. 2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

원화되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3조 제1항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정”→“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하고, “지방보건기정”→“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3. 개정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련법규 :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제항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 3. 17.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3. 3.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3. 4.

다. 상정일자 : 제14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3. 17.)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김영찬)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융자한도에 관한 규정 개정
- 기금 융자한도를 현행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안 제7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7조 제1호중 사용시설자금 융자범위를 현행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 이는 동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요자의 일시부담 비용을 경감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길표 위원) : 사용시설자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좋으나 재정보증 등 융자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
- 답변(산업과장 김영찬) : 가스사업자나 대행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을 하므로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되었다.
- 질의(홍성환 위원) : 시공업자들이 요구하는 설치확인서 첨부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산업과장 김영찬) : 시공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업자를 많이 선정하여 시공할 예정임.

- 질의(정연우 의원) : 기금운용을 은행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은가?
- 답변(산업과장 김영찬) : 상업은행은 시금고, 우리구 금고 계약에 의하여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가스사업자나 대행업자가 대리 신청하므로 일반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다.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년 3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융자한도에 관한 규정 개정
- 기금 융자한도를 현행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안 제7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원본-별첨 1

4. 신·구 조문 대조표-별첨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50%"를 "7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음자범위) 1. 사용시설자금 :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이내 2. "생략"	제7조(음자범위) 1. 70%.....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3. 3. 16.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1. 2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93. 2. 1.
- 다. 상정일자 : 제1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3. 3. 1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이상환)

-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 위탁해지 사유를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1)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수입대상 선정시 신용과 재정등 수입능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서달 및 행정제재등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전병만 위원) : 시우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가?
- 답변(토목과장 이상환) : 맞음.
- 질의(윤명규 위원) :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좋을 것을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 답변(건설국장 김영규) : 각구가 대체적으로 도로굴착 허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으로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으며,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음.
- 질의(김종열 위원) : 시우회에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가?
- 답변(토목과장 이상환) : 우리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